「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맞추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참여하는 동료교사의 인원을 확대함(안 제28조의4제2항)

나.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을 조정(안 제37조의제1항, 제3항)

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조항(제44조의2)이 신설됨('21.12.25. 시행)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변경

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해 장기간 노력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37조의 제1항과 제3항의 적용에 대해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2.1.12.～'22.2.21.)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으로,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을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으로 한다.

제28조의4 제2항 중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다면평가자를 전체 교사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 제1항 중 ‘3점’을 ‘2점’으로, 제3항 중 박사학위 중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에 대한 평정점 ‘3점’을 ‘2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제37조제1항 및 제3항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 조정 시 연구실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제44조에 따라 202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 그 가산점의 평정은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2. (생 략)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생 략)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 ------ ---------- ---------- ---------- ---------- ---------- ---------- ----------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 ---------- ---------- ---------- ---------- 제28조의4(평정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제4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 ---------- ---------- 다면평가자를 전체 교사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제37조(연구실적평정점)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2점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3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박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2점
	그 밖의 학위	1.5점
석사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1.5점
	그 밖의 학위	1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84